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안전보건의무**
— 제조업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본 리플릿은 모든 법적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는?

→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mshs.kosha.or.kr\)](http://mshs.kosha.or.kr)에 제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취급하려는 사업주 ① 해당 물질 취급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②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하고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조치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등 조치 미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양도, 제공하려는 자 또는 취급하는 사업주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는?

→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기계·기구
(9품목)

1. 프레스 2. 전단기 및 절곡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롤러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대 9. 곤돌라

방호장치
(9품목)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7.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8. 가설기자재 9.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보호구
(12품목)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차량 및 비산을 위험방지용 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사용하는 사업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기계·
기구·설비
(13품목)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 2톤 미만 제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9.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검사 대상 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제조업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5~19조, 제62조]

구분	업종	선임 대상	관련 근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시행령 별표2
	그 외 제조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62조)	제조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지정) ※ 단, 1차 금속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적용	시행령 제52조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제조업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시행령 별표1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	시행령 별표3,4
	그 외 제조업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	시행령 별표5,6
	그 외 제조업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 제19조)	제조업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시행령 제24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직무교육은 [시행규칙 별표4] 참조

0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단,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안됨

- **대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아래 업종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장비 제조업 제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 제외) 등 [시행령 별표 9] 참조

0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01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77조]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련 근거
정기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직·판매직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시행규칙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별표4
특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정기·채용·변경 시 교육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특별교육의무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잠깐!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2021.1.19.시행) [시행규칙 별표 5]

02 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3조]

- 사업주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여야하며, 상시 점검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해주는 등 관리하여야 함

03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29조, 제130조 등]

- **작업환경측정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미측정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1**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2, 시기 및 주기 시행규칙 별표 23, 검사항목 시행규칙 별표 24**

-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사항 [시행규칙 별표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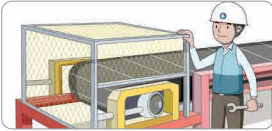
안전한 현장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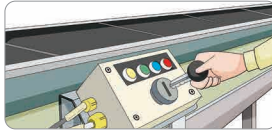
01 끼임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92조 등]

• 사업주는 근로자의 끼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① 원동기, 회전축 등에 덮개, 울 등 설치



② 정비, 보수작업 시 운전정지



③ 기동장치 잠금장치, 표시판 설치



• 동력으로 작동하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해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정비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 및
방호조치

①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④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⑦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문합형으로 하거나 덮개 부착

②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⑤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⑧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
덮개 부착 또는 방호망 설치

③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⑥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⑨ 회전기계 물림점 덮개 또는 울 설치

02 위험성평가 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2조 등]

•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평가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출대상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전기 계약용량 300kW이상)으로서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된 기계·기구·설비 등을 전부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0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3~65조]

• 안전보건조치 및 합동점검 등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조치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2일에 1회 이상), ③ 안전보건교육장소자료 제공 및 교육실시 확인,
④ 경보체계 운영·대피 훈련(발파작업, 화재·폭발 등), ⑤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등)

→ 도급인, 관계수급인, 이들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작업 전 안전보건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도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저장 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그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 산업재해 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산업재해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함
 -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업재해 발생기록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 재발방지 계획
-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약 신청서 사본(재해 재발방지 계획 첨부)으로 대체 가능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 선고받거나 약식명령 고지 시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음
 - 근로자 사망 시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자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등’
 - 사망자 발생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자 발생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2.1.27.)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4.1.27.)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시면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